FTA 활용 및 지원제도 안내

인천본부세관

Ⅰ. FTA 개요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개요

우리나라 FTA 발효현황(15건, 52개국) '17.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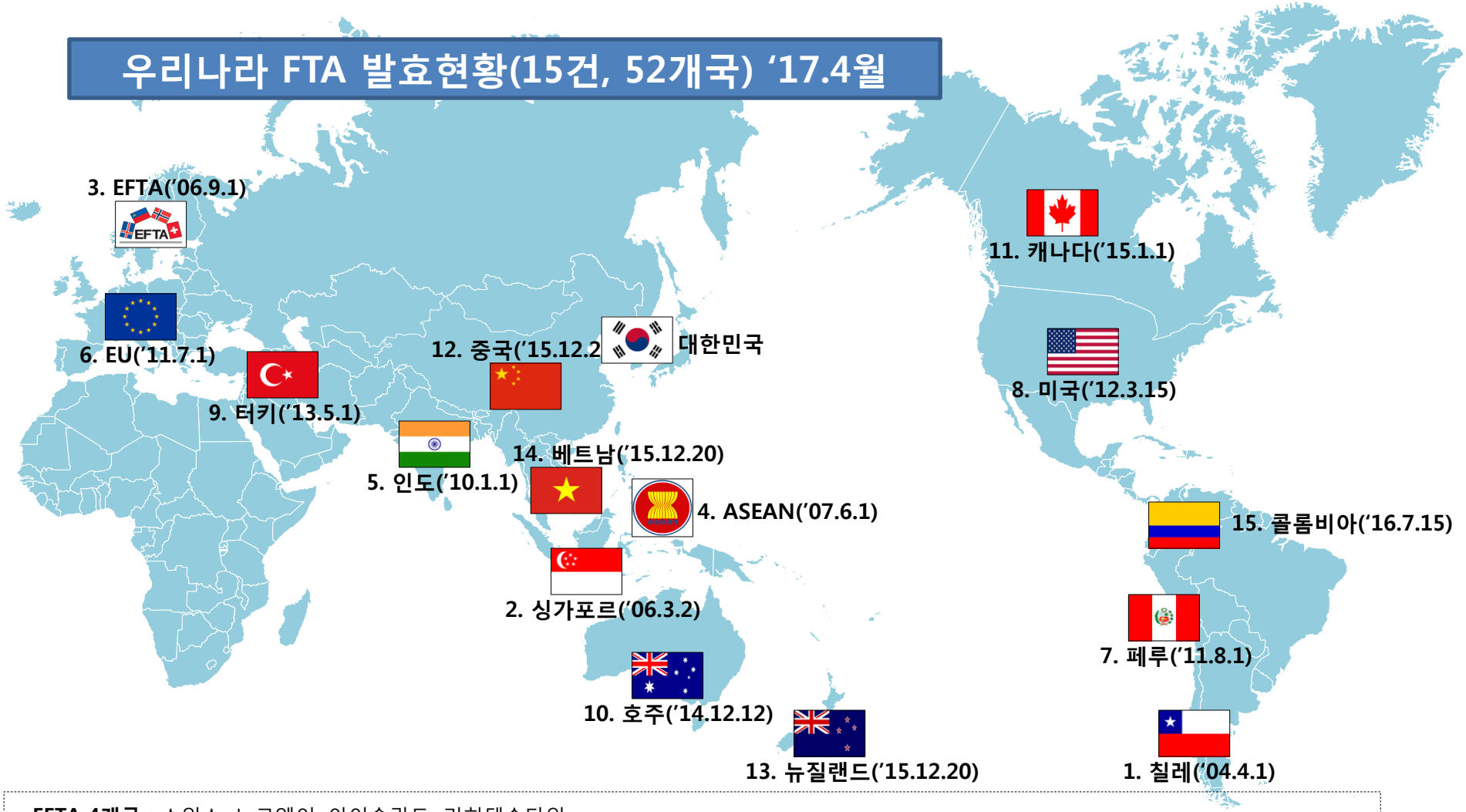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 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영국은 탈퇴 선언 : EU조약(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회국원과 EU간 탈퇴협상 진행(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년에 자동탈퇴 처리)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개요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17.3월 기준)

구 분	협정발효 (15건, 52국)	타결 (1건, 6국)	협상진행 (4건, 17국)	여건조성 (4건, 9국)
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6개국)	한-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멕시코, GCC 일본
교역비중	66.8	0.3	8.3	8.2
누적비중	66.8	67.1	75.4	83.6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한, 중, 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콰테말라, 온두라스, 엘사바도르, 니카라과

F T A 활 용 절 차

수출물품(한국 ➡ 협정상대로)

01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02
품목번호(HS) 확인하기

0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0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05
원산지증명서(C/O) 발급하기

06
수출신고 수리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07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08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09
수출 ·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 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F T A 활 용 절 차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신고 수리전)

01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 **02** 품목번호(HS) 확인하기 → **0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04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취 → **05** 수입신고 및 협정 관세 적용 신청 → **06** 수입신고수리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07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 **08**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 **09** 수출 ·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 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F T A 활 용 절 차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신고 수리후)

01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02
품목번호(HS) 확인하기

0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04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취

05
수입신고 및 수리

06
협정관세 적용 사후신청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07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08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09
수출 ·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 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Ⅱ.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현황

한-아세안 FTA 품목에 한-베트남 FTA추가 자유화

※ 수입액 기준 : (우리) 94.7%, (베트남측) 92.4%

품목수 기준 : (우리) 95.4%, (베트남측) 89.9%

- [공산품]
  - (우리) 초산에틸(HS2915.31)만 미양허하고 공산품 대다수를 일반품목으로 양허
  - (베트남)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도가 낮었던 주요 공산품(가전, 화장품,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한-베트남 FTA를 통해 추가 시장 개방

- [농산물]
  - (우리) 민감도가 낮거나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525개 중 122개에 대해 추가 개방
  - (베트남) 대다수 품목은 2016년, 여타 품목은 2018년 관세 철폐

한-베트남 FTA

활용현황(2016년 누계)

산업별		수출	수입
베트남	합계	36.90%	88.20%
	화학공업제품	49.90%	58.00%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28.90%	87.40%
	철강금속제품	55.60%	87.20%
	전자전기제품	56.30%	80.50%
	잡제품	39.10%	68.00%
	섬유류	29.10%	96.00%
	생활용품	26.30%	87.50%
	농림수산물	36.60%	90.60%
	기계류	53.90%	77.50%
	광산물	11.60%	73.30%

협정별	수출	수입
EFTA	80.40%	56.80%
EU	84.80%	72.10%
페루	83.30%	77.50%
미국	75.60%	70.70%
터키	80.40%	65.90%
호주	77.40%	79.20%
캐나다	89.10%	75.10%
중국	33.90%	58.10%
뉴질랜드	31.80%	87.30%
베트남	36.90%	88.20%
콜롬비아	17.40%	66.40%
칠레	78.60%	99.30%
아세안	52.30%	73.50%
인도	65.80%	56.00%
합계	63.80%	69.60%

4-2. 한-베트남 FTA

협정국	베트남	발효일자	2015.12.20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기관발급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은 세관 발급 - 베트남 : 산업무역부	
	신청권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서식	통일서식(FORM KV)	
	유효기간	발급일 다음날로부터 1년	
	제출면제	과세가격 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직접운송	제3국 경유시 제출서류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사본 그 밖의 직접운송요건 준수 증빙서류	
원산지검증	검증방법	선 간접조사, 후 현지조사	
	검증주체	수출국 세관(수출 세관당국은 6개월내 회신)	
제3국 발행 송장		제3국 송장발행을 인정하며, 원산지증명서 제13란에 "비당사국 송장" 기록하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정보 명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_____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베트남과의 협정 제3.8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제11란에 기재된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8란 기입사항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CTC" "RVC %" (예: RVC 45%) "CTH+RVC 40%" 등 "Specific Processes"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Ⅲ. FTA활용 지원 제도

5. FTA활용 지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FTA특례법 제12조)

(1)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협정, 모든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간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5. FTA활용 지원 제도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제도

(1) 의의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

(2) 업무처리 절차

주체	업무	업무설명
중소제조업체	신청	ㅇ 사전확인신청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입증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제출 ㅇ 신청물품 단위 : 협정별 HS 6단위
세관장	심사	ㅇ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품목분류, 재고관리 등
세관장	심사결과 등록	ㅇ 관세청 YES FTA 포탈 사이트에 게시

5. FTA활용 지원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1) 의의

수출입신고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 회신하는 제도**

(2) 신청절차

신청권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대리인(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신청서, 견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결정통지	신청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품목분류결정통지서를 직접 출력 * 출력방법 :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재심사	신청인은 최초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

(3)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5. FTA활용 지원 제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FTA특례법 제31조)

(1) 의의

FTA활용대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입신고 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2) 신청절차

신청권자	한국의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결정통지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이의제기	신청인은 최초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3) 효력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사전심서서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IV. FTA 활용 정보 시스템

FTA활용 지원 시스템

가. 세계HS정보시스템

관세법령정보 포털 3.0

FTA활용 지원 시스템

나. YES FTA 포탈

원산지결정기준 확인(FTA포탈)

FTA활용 지원 시스템

나. YES FTA 포탈

원산지결정기준 확인(FTA포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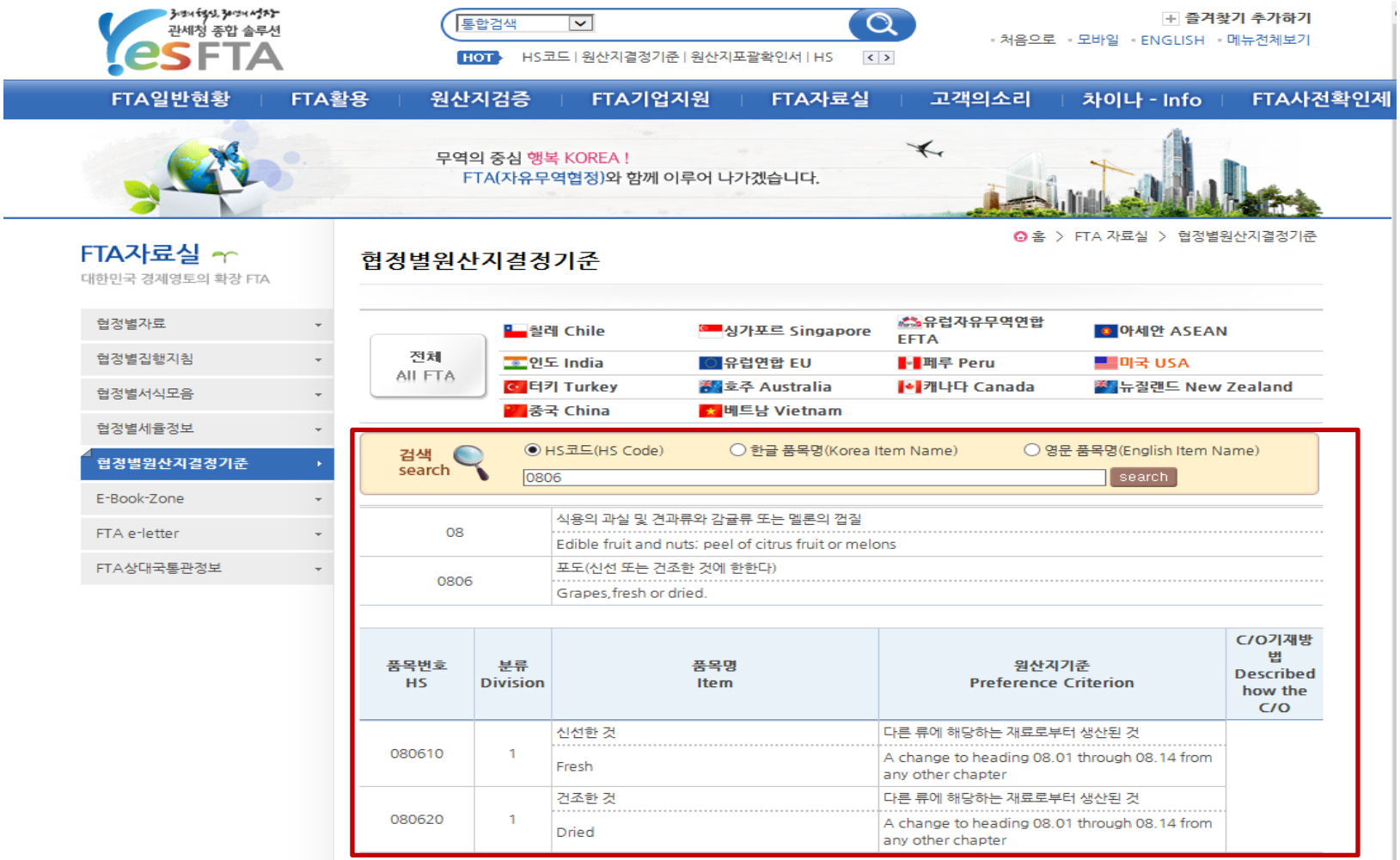

FTA활용 지원 시스템

다.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http://www.fta-pass.or.kr

FTA활용 지원 시스템

라. 사전심사(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itute

통합검색 검색

사이버 미술관 사이버 홍보관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관세평가분류원소개 | 뉴스/소식 | 고객의소리 | 패밀리사이트

› 관세평가분류원 소개 › 관세평가분류원장소개 › 정보공개 › 조직도 › 찾아오시는 길

VALUATION & INFORMATION
평가분류원정보

› 관세평가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방법
-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사항
-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사항
- 품목별 수출입요건조회
› AEO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분류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Quick Menu
관세용어사전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125
찾아오시는 길
TOP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물품설명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무료 FTA 전문교육

마. FTA교육(국제원산지정보원)

YES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

■ 전체 교육과정 (3개 분야, 10개 교육과정 운영)

구분				2017년도 교육 목표		
분야	과정명	대상	주요내용	횟수	회당 시간	인원(명)
일반	기본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수출입통관 실무, FTA 기초	60	15	1,200
	심화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관세사, 관세사사무원	품목분류, FTA 실무,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	30	15	600
	미래인재양성과정	특성화고생	국제무역개론, FTA 활용전략, 원산지실무사 자격취득	30	20	600
		대학생	국제무역 실무, FTA 활용전략,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			
	비즈니스모델 창출과정	중소기업 임원, CEO	FTA 관련 동향, 활용전략	15	4	300
		창업자(시장진입 업체)	활용 전략, 정책지원 사항			
특화	원산지검증 특화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검증대응 교육, 권역별 사례	35	8	700
	인증수출자 특화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동일 업종 종사자)	기본교육, 인증서류 작성 실습	30	12	300
	FTA-PASS 특화과정	FTA-PASS 사용(예정)자	원산지판정 절차, FTA-PASS 사용법 교육	50	6	600
수요자 맞춤형	업종별(공단별) 맞춤형 과정	실무자, 관련단체 등	지역 특화 업종별 전문교육	45	12	690
	1:1 맞춤형 과정	컨설팅사업 비수혜업체 (관련 부서 전직원)	수출품목 활용전략 수립	400	6	2,400
	공급망 관리 맞춤형 과정	수출기업-협력업체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서 발급 · 관리 합동 교육	30	8	900
		합 계		725		8,290

교육 신청 방법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yesftaedu.or.kr) ➡ 교육분야 메뉴의 과정 선택 참조 (희망과정, 지역, 차수 등)

* 선착순 접수이며, 각 회차당 정원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YES FTA 전문교육 일반분야

■ 일반분야 (4개 교육과정)

중소기업 실무자에서 CEO까지에 걸친 FTA에 대한 이해 저변확대와 FTA활용 역량 유지를 위한 미래 FTA활용 인력 양성

❶ 기본과정 (2일, 15시간)

중소기업 실무자의 FTA이해 증진

일수	과목명	교육내용
1일차	FTA의 이해	• FTA체결동향과 FTA관세특례법령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HS 개요 및 통칙
2일차	FTA활용기초	• 원산지관리 실무(증빙서류, FTA-PASS) • 인증수출자 제도의 이해 • 원산지조사의 이해

❷ 심화과정 (2일, 15시간)

FTA활용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실무자와 관세사(사무원)등의 FTA활용 역량 강화

일수	과목명	교육내용
1일차	원산지결정	• HS의 이해 •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2일차	FTA활용 실무	•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 • 인증수출자 및 사전심사제도 • 원산지조사 대응

❸ 미래인재양성과정 (3일, 20시간)

특성화고교생 및 대학생의 FTA활용 역량 강화로 FTA 전문인력 저변 확대

대상	일수	과목명	교육내용
특성화고	1일차	원산지이론	• FTA개요 • 수출입통관과 FTA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2일차	원산지 실무	• FTA실무개요, 원산지판정 및 증명
	3일차	FTA-PASS 이해	• 활용개요 • 입력정보 작성과 등록 • 원산지판정과 해석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부가기능
대학교	1일차	FTA와 수출입	• 관세법 개요 • 수출입통관의 이해 • FTA협정 및 관세특례법령
	2일차	품목분류	• HS 개요, 주요 물품 분류원칙
	3일차	원산지결정	•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조 • 원산지결정 일반, 특례기준

❹ 비즈니스모델창출과정 (1일, 4시간)

중소기업 임원(창업자)의 FTA활용 필요성 인식 확대 및 FTA활용 성공사례 전파

일수	과목명	교육내용
1일차	FTA Biz-Model	• FTA 동향 및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성공사례 • FTA활용 지원제도

해외통관애로 해소

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입 기업 실무자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 방문
(fta.customs.go.kr)

해당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통관애로 지원신청서 작성

신고세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및
FTA 통관애로 상담

세관 통관애로 담당자

통관애로 접수 및 상담

자체 해결시 본청 보고후
종결처리

미해결 시 본청이송

관세청

관세청「FTA 해외통관애로 현장 해결반」을 통해
해당 상대국과 협력회의 및 현지 관세관 등을 통해 해소

해외통관애로 해소

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해외통관애로 신고 및 상담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 032-452-3639

✓ FAX : 032-722-3811

✓ E-mail : incheonsupport@customs.go.kr

✓ 블로그 : http://fta-aeocenter.com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 '고객의 소리'→'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지원요청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foreign)

✓국가별 통관정보, 통관애로 사례 등 정보제공

관세관 파견국 및 연락처

파견국가	성명	연락처
EU(벨기에)	주태현	(+32)2 661 0070
미국(워싱턴)	강연호	(+1)202 939 5677
미국(LA)	이진희	(+1)213 385 9300(구내 70번)
일본	오상훈	(+81)3 6400 0695
중국(북경)	이소면	(+86)10 8531 0844
중국(상해)	최재관	(+86)21 6295 5000, 2592(내선 205)
홍콩	하유정	(+852) 2862 1566
태국	이철재	(+66)2 247 3242
베트남	양승혁	(+84) 83 822 5757 (내선 128)
인도네시아	임현철	(+62) 21 2967 2555
브라질(상파울루)	차상두	(+55) 11 3141 1278